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11,787,921	30,353,638
일반회계		931,925,818	27,957,775
특별회계		79,862,103	2,395,863
	공기업특별회계	64,596,676	1,937,900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8,422,474	852,674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6,174,202	1,085,226
	기타특별회계	15,265,427	457,96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00	4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90,288	29,709
	의료보호특별회계	3,291,357	98,741
	수질개선특별회계	866,440	25,993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5,142	454
	주택 사업 특별 회계	300,700	9,021
	산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9,800,000	294,000

- 제 2 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 제 3 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 12,657,492 " 천원으로 한다.
-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에 포함된 경비,재무활동경비,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